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81

발의연월일: 2024. 12. 24.

발 의 자: 민홍철 · 문진석 · 한정애

정준호 • 허성무 • 한준호

신정훈 · 황 희 · 위성락

김교흥 • 위성곤 • 차지호

장철민 · 박홍근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의지정과 변경, 양육 방법의 결정 등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利害)에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절차와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가정폭력'과 관련된 명시적 규정이 없는바, 가정폭력을 경미한 사안으로 여기거나 해당 내용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내용에 가정폭력 이력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하고,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서로 분리

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정위원회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이력을 확인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제56조 제2항 및 제58조제3항 신설).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가사조사관은 필요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과 가정폭력 이력 등에 대하여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기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제5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을 조사할 때 당사자는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서로 분리하여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사조사관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의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 대 이력을 확인하여 자녀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가사조사관) ①・② (생	제6조(가사조사관) ①・② (현행
략)	과 같음)
<u><신 설></u>	③ 가사조사관은 필요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
	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과 가정폭력 이력
	등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기타 전문적 지
	식을 활용하여 조사하여야 한
	<u>다.</u>
제56조(사실의 사전 조사) (생	제56조(사실의 사전 조사) ① (현
략)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을 조사
	할 때 당사자는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서로 분리하여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사조사관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
	<u>다.</u>
제58조(조정의 원칙) ①・② (생	제58조(조정의 원칙)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을 할 때
	에는 당사자의 가정폭력 또는

<u>아동학대 이력을 확인하여 자</u> <u>너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u> <u>려하여야 한다.</u>